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- 「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」

◇ 제 · 개정 이유

- 정보화 추진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의 범위 등을 일부 개선하고, 정보시스템의 신규 도입·통폐합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규정상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◇ 주요내용

- 가. 정보화 추진 업무를 신속·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범위를 일부 개선하고, 실무협의회 민간위원의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(안 제5조)
- 나.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 단계에서 정보시스템의 신규 도입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, 실무협의회에 포함하는 민간위원의 자격 기준을 「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」 제45조제2항에 따르도록 함(안 제8조 제4항 신설)
- 다. 매년 정보시스템의 통폐합 여부 등의 검토를 의무화하면서,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통폐합 여부를 최종 검토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의2 신설)

라.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정보시스템의 신규 도입·통폐합 등을
심의·검토할 경우의 심의결과표 서식을 정함(안 별지 제2호서식)

마. IRM(정보자원관리시스템) 등록 자료에 대한 실무부서의 현행화 관리
의무를 명확히 규정함(안 제11조제3항)